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그 밖의 아동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 계획 수립,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 시설,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아동 건강증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목적 및 책임의 명확성 규정
 -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제시
 - 기본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안 제4조)
 -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안 제5조)
- 공공이용시설의 반영내용 및 안전시스템, 건강증진 등
 - 공공이용시설의 반영내용 제시(안 제6조)
 - 아동 안전시스템, 건강증진 등(안 제7조 ~ 제8조)
- 추진위원회 기능 및 구성, 위원에 관한 규정
 -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 제10조)
 -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해촉, 수당 등(안 제11조 ~ 제1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지방자치법」, 「유엔아동권리협약」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붙임)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아동관련 시설, 안전시스템, 건강증진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에서 제17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 행정서비스 수요증가와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